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과평가 제도개선 등〉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338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평가 정의의 정비(안 제2조)	4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의 일원화(안 제6조, 제7조 및 제22조)	11
3. 특정평가 대상 정비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마련(안 제8조)	24
4. 성과지표심의위원회 폐지(안 제12조)	37
5. 평가결과 활용범위 확대 및 사업 간 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41
6.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제도 정비(안 제19조)	4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우영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7. 30.

다. 회 부 일 : 2026. 7. 31.

II. 제안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하는 이원화된 평가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원화된 평가체계는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평가를 초래하여 행정 비효율화와 피평가자인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 가중 문제뿐 아니라, 평가 기준 및 결과의 일관성을 저해하여 평가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조정과 예산 배분에 효과적으로 환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성과평가는 연구목표 달성 여부 등 정량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및 혁신성 등 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 예산이나 존속 여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단이 없어, 특정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성과평가의 개념을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조정, 예산 편성 및 사업 간 조정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에 맞추어 특정평가 대상, 표준 성과지표 운영체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을 조정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정비하고, 성과평가의 개념을 연구목표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성과의 우수성 및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는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함(안 제2조).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 결과 대신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에 맞추어 특정평가 대상 및 표준성과지표 운영체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예산을 조정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함께 정비함(안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

마. 평가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수정·보완뿐만 아니라 사업 간 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 결과의 정책 및 예산 환류 기능을 강화함(안 제15조).

IV. 검토의견

1. 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평가 정의의 정비(안 제2조)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2조제1호는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5호는 성과평가의 내용에 성과의 우수성과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추가함으로써,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연구개발 수행과정을 함께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8호는 안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던 자체평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자체평가의 정의를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로 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u>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u> 말한다.	1. ----- ----- ----- ----- <u>사업을</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성과평가”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u>성과지표를</u> 포함한 추진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u>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u>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5. ----- ----- <u>성과지표</u> 등 ----- ----- <u>성과 달성</u> <u>여부와 성과의 우수성 및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u> -----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8.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가 <u>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등에</u>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8. ----- ----- ----- ----- ----- ----- <u>제10조에 따라 연구기관에</u>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연구개발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런데 2020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이관되었고,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²⁾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은 성과평가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6., 2026. 3. 10.>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일반사업의 경우 추진과정, 성과 및 환류계획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음. 추진과정에는 20점부터 40점까지, 성과에는 50점부터 70점까지, 환류계획에는 10점이 배정되며, 성과 부문에서는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함께 성과의 질적 우수성도 평가하고 있음.

○ 한편, 현행 평가지표는 정량지표·정성지표 또는 질적 지표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집행 효율성이나 성과목표 달성도와 같이 실적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따라 논문·특허 건수나 성과목표 달성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부문에 30점, 질적 성과 부문에 70점을 배정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함.

< 현행 및 개정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방식 비교 >

구분	현행	개정 후 평가계획(안)
평가구조	- 일반사업: 추진과정 20~40점, 성과 50~70점, 환류계획 10점	- 사업계획·사업관리 30점, 질적 성과 70점
사업계획·관리	- 집행 효율성, 사업계획 적정성, 위험관리, 환류 및 개선 노력 등	- 사업내용의 타당성, 재정지원 필요성, 유사·중복성, 추진체계 및 집행의 적정성, 환류 및 개선 노력

구분	현행	개정 후 평가계획(안)
		등
성과	- 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함께 평가하나, 실적치가 있는 항목은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	-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및 달성도와 함께 대표성과의 질·파급력·사회적 기여·영향력 등을 중점 평가
연구의 도전성	-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목표 이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미 있는 도전’을 질적으로 평가할 계획
시설장비 구축사업	- 사업관리 70점, 목표달성도 30점의 별도 기준 적용	-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검토 중인 평가계획임.

○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성과평가의 법률상 정의에 성과의 우수성과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을 추가함으로써 성과목표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질과 연구개발 수행과정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전환하려는 것임.

- 현행 평가에서도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있어 개정안이 새로운 평가요소를 처음 도입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연구개발성과는 연구분야와 사업유형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는 형태와 시기가 다르고, 도전적인 연구는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성과평가의 정의에 성과의 우수성과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을 명시하고 질적 성과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

여 연구개발의 혁신성과 도전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2조제8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안 제7조의 개정내용을 자체평가의 정의에 반영하는 연계정비에 해당함.
- 다만,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와 동일한 내용을 이 법에 다시 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같은 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가 변경될 경우 양 법률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 제2조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일치시키고, 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연구과정의 도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성과평가의 정의를 정비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폐지에 따른

평가체계 개편을 정의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의 일원화(안 제6조, 제7조 및 제22조)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6조제2항은 사업 전략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을 삭제하려는 것임.
- 안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체평가 점검을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 전략계획의 적절성과 성과 등을 직접 평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22조제2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및 자체평가 점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로 개편됨에 따라 성과평가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성과평가정보의 명칭을 개편된 평가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u>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u> ③ · ④ (생략)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u>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 ①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의 적절성 및 성과 등 평가(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보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u>

현행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 제4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①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①

현행	개정안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활용 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등 성과평가정보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 <u>제7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 결과</u> , ----- ----- ----- ----- -----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의 개선 및 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 전략계획에는 해당 사업의 평가시기와 평가대상 기
간 및 성과목표 등을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도 포함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종전의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사업 전략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점검 대상은 2023년 267개 사업에서 2026년 475개 사업으로 증
가하였으며, 평가계획의 설정이 부적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사
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60개 수준임.

< 2023~2026년 전략계획서 및 평가계획 점검 현황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략계획서 점검 사업 수	267개	405개	430개	475개
평가계획 보완요구 사업 수	143개	177개	160개	점검 중
점검 사업 대비 비율	53.6%	43.7%	37.2%	-

※ 평가계획 보완요구는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지적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계획에 대한 보완요구는 주로 평가연도 및 평가시기의 설
정 오류, 종료 후 성과관리·효과성 분석계획 미비, 평가대상 성
과목표 및 평가대상 기간·단계의 설정 부적정 등에 관한 것임.
- 사업 전략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성과 및 환류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기준 준수 여부 및 평가점수·등급 부여의 타당성 등을 상위 점검하고 있음.

- 현행 평가체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및 종합적 성과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위점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사업은 재평가와 추가 점검을 거쳐야 함.
- 개정안은 이러한 자체평가와 상위점검을 폐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사업성과보고서만 제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조직을 통하여 사업을 직접 평가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 현행 및 개정안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절차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평가주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접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자체평가실시계획 수립,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자체평가 및 재평가 실시	사업성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평가과정에서의 소명
제출자료	자체평가실시계획, 사업별 자체평가보고서, 종합적 성과분석보고서, 재평가 후 수정 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자체평가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1·2차 적절성 점검	서면·대면평가, 부처 소명 및 평가결과 확정

구분	현행	개정안
평가절차	① 자체평가계획 수립 ②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③ 자체평가 실시 ④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⑤ 1차 상위점검 ⑥ 부처 재평가 ⑦ 2차 상위점검 ⑧ 최종 판정	① 평가조직 구성 ②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③ 서면·대면평가 및 부처 소명 ④ 평가보고서 작성 및 결과 확정
평가기간	전년도 12월~평가연도 5월	전년도 12월~평가연도 5월
성과평가정보	자체평가 결과 및 상위점검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 결과

※ 개정안의 평가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검토 중인 계획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실시계획 수립,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재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므로, 부처의 평가 관련 절차와 제출자료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적절성을 다시 점검하던 평가체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직접평가로 일원화함으로써, 평가기준과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개선과 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시기와 대상을 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부처 자체평가의 폐지에 따라 사업 전략계획의 기재사항에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은 개편된 평가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안 제22조제2항 역시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정보를 자체평가 및 상위점검 결과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 결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평가체계의 개편을 성과평가정보의 등록·공개 범위에 반영하려는 연계정비에 해당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7조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대상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의 직접적인 대상과 그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기관을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기업 등에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제 연구데이터와 증빙자료를 연구개발기관·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도 협조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바, 이러한 취지라면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의 대상에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의 장을 명시하는 등 요청대상과 협조의무대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 제7조제5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평가를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의 장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안 제7조제3항은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방문조사는 연구개발기관의 시설

등에 직접 출입하여 사업의 추진현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별도의 조사절차이므로 일반적인 협조 요청만으로 이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시설·장비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 등은 서면자료만으로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등 명시적인 근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안 제7조제4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³⁾은 기존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심의회의와 그 산하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가 이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하고 있음.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그 산하 위원회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기존 위원회를 우선 활용하고, 만약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⁴⁾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별도의 합의제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안 제7조제4항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단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행정기관위원회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구성과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평가단이 평가결과를 합의제로 심의·조정·확정하도록 운영될 경우에는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행정기관위원회에 해당할 수 있음. 이에 평가단은 사업별 전문적·기술적 평가를 수행하고 최종 평가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장관이 확정하도록 그 기능을 명확히 하되, 합의제 심의·조정
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넷째, 관계부처는 단일평가체계의 도입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안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연구기관
과 기업의 행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범위와 제
출시기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요구는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평가할 경우 부처별 정책목적과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위원의 구성과 평
가지표 설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평가
방법과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임. 또한 평가결과가 예산의 배분·조정과 사업 간 조정 등에 활
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연구자 등의 이의신청 절
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중소기업부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평가로 일원화할 경우 평가의 왜곡 및 부처의 정책 자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성과 보고서와 추가 증빙자료 제출로 인해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행 자체평가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체평가와 상위점검을 단일평가로 통합하면 부처의 평가절차와 제출자료를 축소하고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조직을 통하여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임.

3. 특정평가 대상 정비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마련(안 제8조)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8조제1항은 특정평가 대상에서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정하는 등 평가체계 개편에 맞추어 특정평가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안 제8조제5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다음 연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8조제6항은 연구개발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시정조치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기한 전이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제8조(특정평가) ① ----- -----

현행	개정안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u>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u> 4. (생략) 5. <u>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u> 6.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 -----. 1. 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현행과 같음) 5. <u>제7조제1항</u>-----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 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의 예산 을 조정할 수 있다.</u> 1. <u>시정조치 이행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u> 2. <u>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연구 개발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u> 3.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u> <u>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 정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u>
<u><신설></u>	

현행	개정안
⑤ · ⑥ (생략)	<u>구개발사업의 종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u> <u>1. 연구개발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u>2.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연구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특정평가는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임.

○ 현행 제8조 및 현행법 시행령⁵⁾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특정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특정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평가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특정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중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부처 간 역할분담과 연계·협력체계 및 공동 성과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현행법상 특정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2024년 9개, 2025년 14개, 2026년 9개 등 최근 3년간 연도별 합계 32개 다부처 공동사업이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2024~2026년 다부처 공동사업 특정평가 현황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평가대상 사업 수	9개	14개	9개	32개

※ 2026년 특정평가는 현재 진행 중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안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직접 평가하도록 평가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다부처 공동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을 다시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 후에도 다부처 공동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의 대상이 되고,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거나 사업 간 중복조정·연계가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 제8조제1항의 다른 기준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따라서 다부처 공동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특정평가의 법정 선정기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법 제15조제1항6)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포함한 각종 성과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상으로도 특정평가 결과를 사업 개선과 연구개발예산에 환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특정평가 후속조치 현황을 보면, 2025년에는 49개 평가대상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통합·폐지 의견이 제시되었음.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소관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 2023~2026년 특정평가 결과 및 시정조치 현황 >

구분	평가사업 수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이행계획 미제출·시정조치 미이행
2023년	9개	이행계획 모두 적절	없음
2024년	10개	모두 정상추진·사업개선	없음
2025년	49개	정상추진·사업개선 36개, 감액 필요 12개, 사업 통합·폐지 1개	없음
2026년	9개	평가 진행 중	미확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현행 제15조에 따른 일반적인 예산 환류에 더하여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예산 조정 근거를 구체화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업을 종료 기한 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사업의 지속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8조제5항의 “차년도 사업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는 표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업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7)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
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
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
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
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
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
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
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
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
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
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제5항

관이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권한은 있으나 정부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편성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업의 예산액을 독자적으로 확정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님.

- 다른 입법례⁸⁾의 경우에도 예산편성권자를 구분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 제15조제1항도 이미 특정평가 결과를 연구개발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련 특별법」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성장정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 제8조제5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산 배분·조정 권한과 현행 제15조의 문언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8조제6항은 특정평가 결과 연구개발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과 개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관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등을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업을 직접 중단하도록 하기보다는 특정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을 요구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현행 사업관리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의 “중대한 하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및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사업 중단이라는 중대한 효과에 비하여 다소 추상적이므로, 사업의 기획·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추진체계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더라도 개선 또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으로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안 제8조제7항은 현행 제5항⁹⁾의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그대로 이관한 것으로 내용상 변경은 없음. 다만 신설되는 제5항의 예산 조정·배분에의 반영과 제6항의 연구개발사업 변경·중단 요구는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 처리결과가 확정된 후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8조제8항(현행 제6항)은 특정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특정평가)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특정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있으므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예산 조정·배분에의 반영, 연구개발사업 변경·중단 요구 및 이의신청과 후속조치 간의 연계에 관한 기준·방법과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관계부처는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 및 사업 중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특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해당 사업에 속한 개별 연구개발과제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사업 단위의 중대한 하자나 목표달성 가능성 부족이 개별 과제의 저성과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보건복지부는 예산 조정과 사업 중단이 부처의 정책 추진 및 연구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과 절차, 사업 중단의 판단기준 및 이의신청·전문가 검토 등의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특히 일부 과제의 문제로 사업 전체가 중단될 경우 정상

적으로 수행 중인 과제까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대한 하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및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급격한 시장·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 제6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예산 환류를 강화하고, 중대한 하자로 개선 가능성이 없는 연구개발사업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성과지표심의위원회 폐지(안 제12조)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생략)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표준 성과지표의 개선-----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표준 성과지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전략계획과 연구기관의 기관운영계획·연구사업계획에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하는 지표임.

- 현행 제12조¹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그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관계부처 공무원 5명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준 성과지표 안내서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총 6차례 심의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2022년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1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후 같은 해 12월 제6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음.

-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성과평가, 성과관리·활용 및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성과평가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현재 제7기 성과평가전문위원회는 정책·경영,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의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 성과지표 개정안 등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성과평가 관련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 및 개정안의 표준 성과지표 심의체계 비교 >

구분	현행법상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개정안에 따른 심의체계
구성	위원장 1명, 관계부처 공무원 5명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20명	성과평가전문위원회 민간전문가 17명 및 운영위원회
역할	표준 성과지표 및 전략계획서 점검결과 등 심의	전문가·관계부처 의견수렴,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사전검토 및 운영위원회 검토
운영 현황	2020~2022년 총 6차례 서면심의, 2023년 이후 미운영	제7기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운영 중
법률상 근거	현행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2조제2항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

쳐 표준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심의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성과지표심의위원회가 2022년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성과평가전문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유지하기보다 기존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과 실제 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지표 심의체계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2항은 표준 성과지표의 “개선”을 위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발·개선·설정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가 2022년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성과평가전문위원회가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표준 성과지표 심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평가결과 활용범위 확대 및 사업 간 조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15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평가결과를 자체평가 결과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 특정평가, 연구기관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로 확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생략)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u>자체평가</u> 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u>수정·보완</u>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 <u>평가</u> ----- ----- ----- <u>수정·보완 및 사업 간 조정</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성과평가 결과를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의 추진계획과 예산 등에 환류하는 것은 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현행 제15조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평가결과를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로 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평가결과의 환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한 사업은 9개, 성과목표를 변경한 사업은 6개,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28개였으나 사업의 통합·이관·종료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음.

< 2025년 평가결과 환류 현황 >

구분	사업계획 수정	성과목표 변경	사업 통합·이관·종료	예산 감액
사업 수	9개	6개	0개	28개

※ 평가 차년도 전략계획서 수정·변경 신청서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자체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 특정평가 및 연구기관 상위평가 결과까지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평가결과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또한 평가결과를 개별 사업의 추진계획이나 성과목표를 수정·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통합·이관 등 사업 간 조정에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안 제15조제2항의 “사업 간 조정”이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사업 간 조정만을 의미하는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사업 간 조정까지 포함하는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사업 간 조정에는 부처 내 사업 간 조정과 다부처 사업 간 조정이 모두 포함되고, 예산의 증감, 사업의 이관 및 통합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임. 이 경우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업을 단독으로 조정할 수는 없으므로,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제도 정비(안 제19조)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19조제2항은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효과성 분석을 대규모 사업,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성과 관리·활용 계획 및 효과성 분석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① (생략)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연구개발사업이</u>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 과정, 제1항에 따른 관리·활용 계획의 추진 결과 및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분석(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 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② ----- <u>대규모 사업,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이</u> ----- ----- ----- ----- ----- ----- ----- -----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③ -----

현행	개정안
따른 관리·활용 계획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④ (생략)	----- -----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분석은 사업 종료 이후 사업 전략계획과 성과 관리·활용 계획의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와 활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임.
- 현행법은 사업의 규모, 성격 및 정책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종료 후 5년 이내에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과성 분석과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 규모와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음.

- 최근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 사업은 2023년 16개, 2024년 21개, 2025년 87개로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결과를 점검한 사업도 2023년과 2024년 각각 3개에서 2025년 21개로 증가하였음.

< 2023~2025년 효과성 분석 및 점검 현황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효과성 분석 사업 수	16개	21개	87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사업 수	3개	3개	21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또한 연도별 종료사업 수가 2022년 78개에서 2026년 190개로 증가하는 등 향후 효과성 분석 대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사업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 필요성이 큰 사업을 선별하고 분석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임.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규모와 목적, 연구성과의 유형 및 파급효과 등이 서로 다르므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분석이 형식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사업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분석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개정 후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종료 시 추진 결과의 종합분석을 포함한 성과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효과성 분석 결과도 성과평가정보 시스템에 등록·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인 성과관리와 정보 공개 체계는 유지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별도 점검 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중복적인 절차를 줄이고 소관 부처의 성과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분석이 형식화되고 전문기관과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석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을 조정하여 효과성 분석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6